

평창강 하류권역(지류 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
전략 환경영향평가

-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2020. 8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평창강 하류권역은 본류인 평창강과 지방하천 10개소로 수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금회 하천기본계획은 평창강 지류 구간 지방하천 중 4개소에 한함. 기존 하천기본계획은 하천 및 행정구역 단위로 수행되어 왔으나, 국가하천에 비해 지방하천의 기본계획 수립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동일 권역 내 하천의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많으며, 권역 내 각 하천간의 기본계획 수립 시기, 수립주체 등이 서로 상이하여 자료 공유 및 활용, 사업추진 등에 협의·조정애 어려움이 따르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권역별로 하천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또한, 평창강 하류권역은 그간 하천개수사업 추진, 도시화 및 기상변화 등으로 인하여 하도 및 수문·수리특성 변화와 하천관리 운영의 미비점 보완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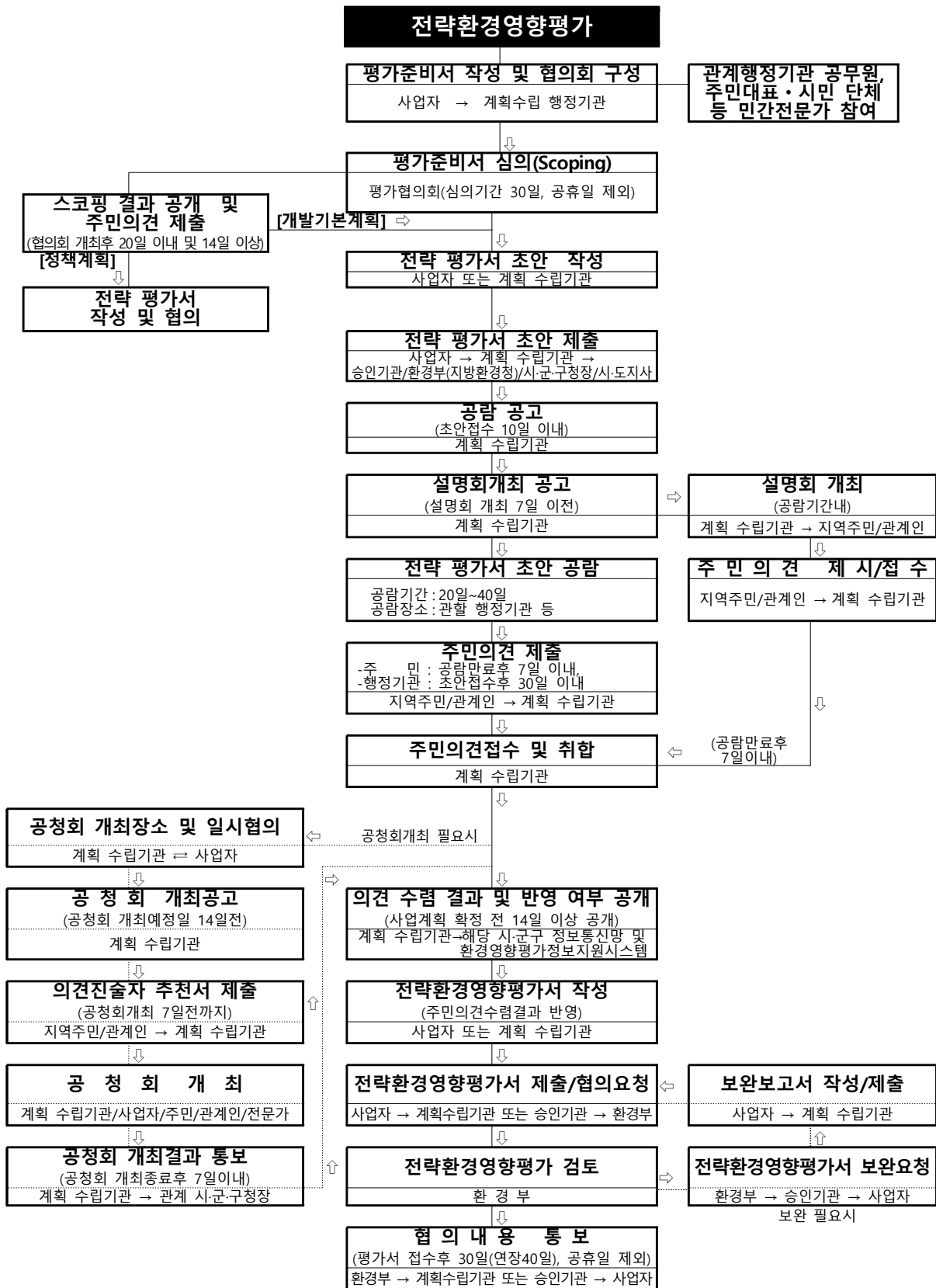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1항과 동법시행령 제7조 2항 및【별표 2】의 『2. 개발기본계획』 중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 및 협의요청시기”는 다음 표와 같음

〈 표 1 - 1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3)「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정비 기본계획	「하천법」제25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그림 1 - 1 〉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1.3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여부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1항」 및 「등법 시행령 제7조 2항」 관련 [별표2]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사업(개발기본계획)으로서, 본 계획하천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단양군 일원에 위치하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별표1]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이 되는 거리”』에 의거하여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표 1 - 2 〉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이 되는 거리

1. 일반기준

구 분		경계로부터 거리	해당여부
자연공원	최고봉 1200m이상	2,000m	×
	최고봉 700m이상	1,500m	×
	최고봉 700m미만 및 해상형	1,000m	×
습지보호 지역		300m	×
생태·경관 보전지역	최고봉 700m이상	1,000m	×
	최고봉 700m미만 및 해상형	500m	×

비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습지보호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 거리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의 거리기준

- 제1호의 일반기준에 불구하고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에 위치한 경우에는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300미터로 한다.

1.4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 2012년 06월 : 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용역 착수
- 2020년 06월~07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의견수렴(예정)
- 2020년 09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예정)
- 2020년 09월~10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예정)
- 2020년 10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예정)
- 2020년 11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작성 및 협의요청(예정)
- 2020년 12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예정)

1.5 계획의 내용

- 사업명 : 평창강 하류권역(지류 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 연 장 : 평창강 하류권역(지류 구간) 총 37.58km (4개 하천)
-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승인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계획의 확정·결정·승인)
- 계획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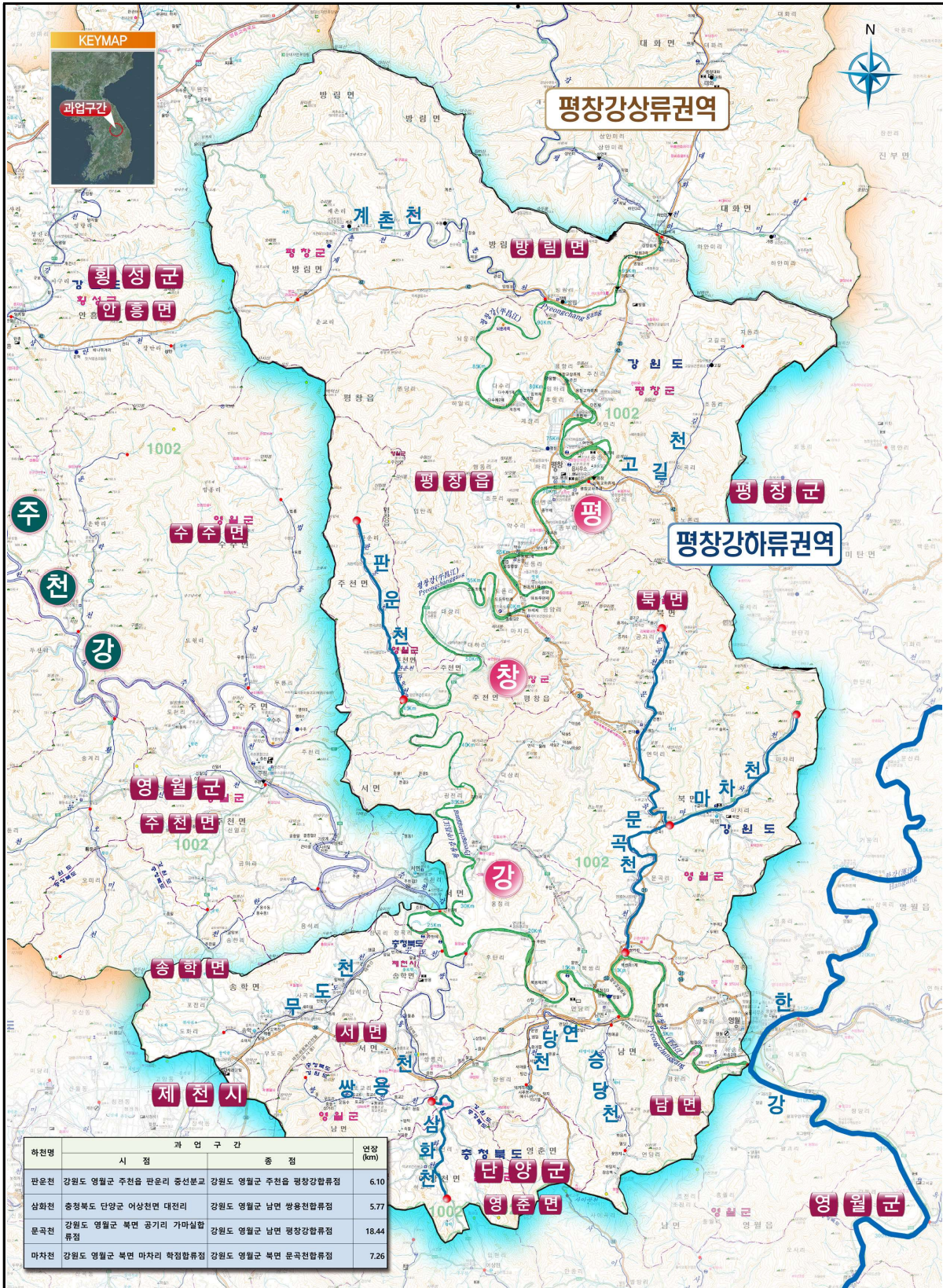
〈 표 1 - 3 〉 계획 범위

하천명	과업구간		유역면적 (km ²)	하천연장(km)	비 고
	시 점	종 점			
판운천	강원도 영월군 주천읍 판운리 중선분교	강원도 영월군 주천읍 평창강합류점	24.34	6.10	
삼화천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	강원도 영월군 남면 쌍용천합류점	21.1	5.77	
문곡천	강원도 영월군 북면 공기리 가마실합류점	강원도 영월군 남면 평창강합류점	93.17	18.44	
마차천	강원도 영월군 북면 마차리 학점합류점	강원도 영월군 북면 문곡천합류점	34.13	7.27	

1.6 기대 효과

- 개수 및 통수능력 확보에 따른 원활한 우수배제로 홍수피해 최소화
-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 종전보다 생활환경이 증진
- 자연친화적 호안공법 도입 및 상·하류의 일관성 있는 개수계획 수립으로 환경친화적인 하천 조성
- 하천의 자연적 형태 및 유역개발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하천환경 보전 및 개발 가능

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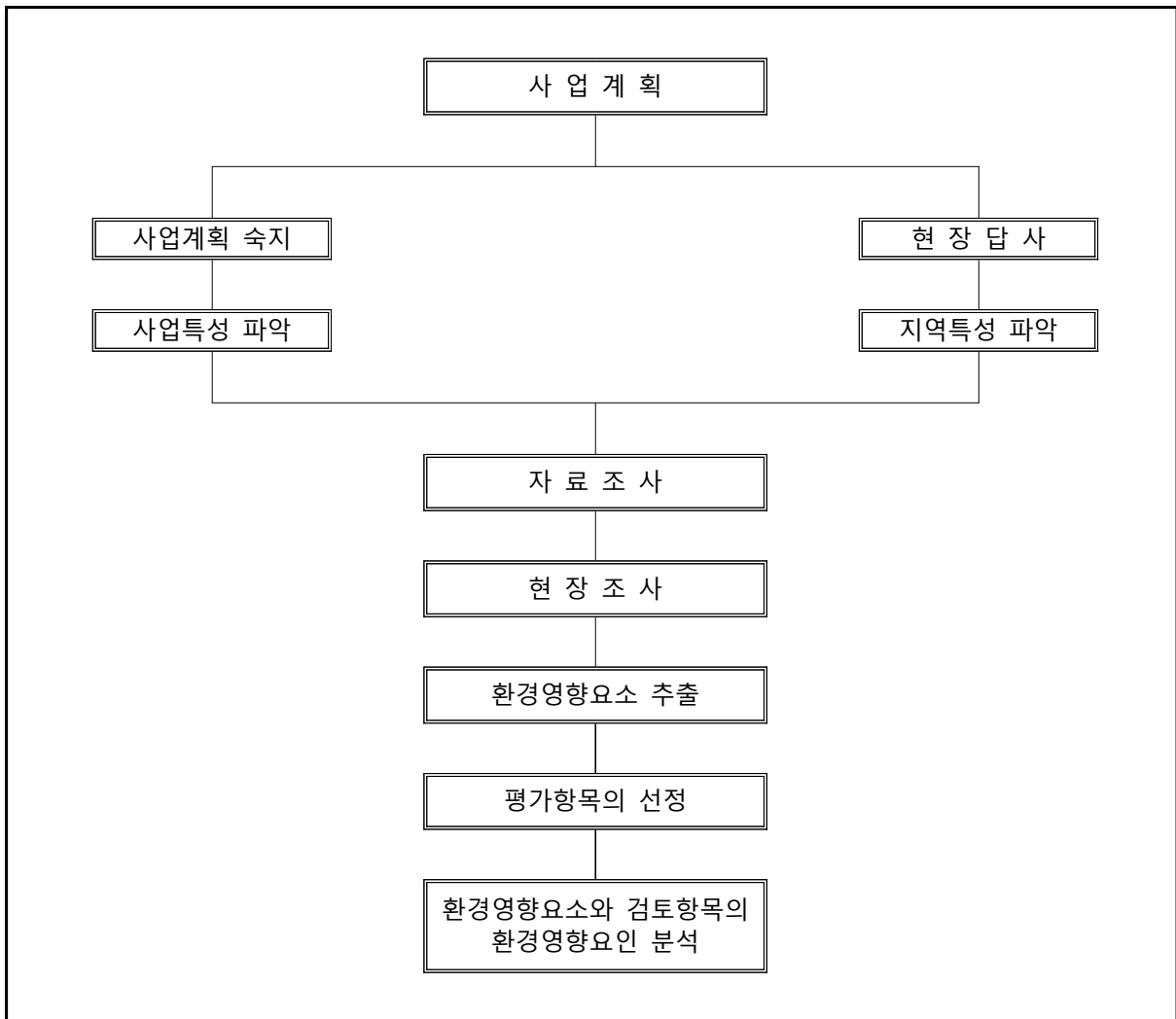


〈 그림 1 - 2 〉 계획하천 위치도

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2.1 평가항목의 설정

- 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평창강 하류권역 내 총 37.58km(지류 구간)에 대하여 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 치수경제 및 수질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당해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하천 재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따라서, 본 평가준비서에서의 검토항목은 하천기본계획을 검토·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평창강 하류권역 및 주변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감안한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하였음



〈 그림 2 - 1 〉 평가항목설정 흐름도

2.1.1 환경영향요소 추출

- 본 하천기본계획을 실시함에 있어 환경에 영향을 미칠 환경영향요소와 이와 연관되는 환경 인자를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음

〈 표 2 - 1 〉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공사단계	운영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단면변화 등 자연지형변형 ○ 토량이동(절·성토) ○ 토사유출 및 부유물질 농도 증가 ○ 수생 및 수변식물 훼손 ○ 건설장비 및 인력투입 ○ 구조물 공사(제방, 배수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의 서식처 변화 ○ 하천식생의 변화 ○ 하천의 홍수시 소통

2.1.2 평가항목의 설정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평가해야 하는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평가항목·범위 결정 등을 위한 지침서), 2011.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환경부, 2017.12』 등의 자료를 참조하였으며, 추출된 환경영향요소와 연계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항목을 선정하였음.

〈 표 2 - 2 〉 평가항목 선정

구 분		선 정 항 목		제외항목
		중점검토항목	일반검토항목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 관	-	-
	수환경의 보전	수 질, 수리·수문	-	해양환경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소음·진동	기상, 토양	온실가스, 악취,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	친환경적 자원순환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위락, 인구·주거·산업

〈 표 2 - 3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제외)사유

구 분	평가항목	선정(제외)사유	비고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본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과의 적정성 검토 필요	-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호안형식 적용방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보호지역,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파악 및 보호종 등의 출현시 보호대책 수립 필요	동·식물상 (중점)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하천별 계획수립에 따른 보호지역 및 보호대상시설물 분포여부 사전파악	자연환경 자산 (중점)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축제, 보축, 호안정비 등 계획수립시 지형 변화 예상	지형·지질 (중점)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보전지역(야생생물보호구역 등) 분포여부 및 자연경관심의 대상여부 검토 필요	경관 (중점)	
	수환경의 보전	·공사시 부유토사 발생 및 저감방안 수립 필요	수질 (중점)	
		·홍수량, 홍수위 검토를 통한 치수 안전성 부합여부 검토 필요	수리·수문 (중점)	
		·하천의 입지적 특성상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음	해양환경 (제외)	
나)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대기질 예측시 참고자료 활용	기상 (일반)	
		·건설장비 가동 및 토공발생에 따른 비산 먼지, 대기오염물질 발생 및 저감방안 수립 필요	대기질 (중점)	
		·하천사업의 특성상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 미미	온실가스 (제외)	
		·하천사업의 특성상 악취에 미치는 영향 미미	악취 (제외)	

(표 계속)

구 분		평가항목	선정사유	비고
2. 입지의 타당성	나)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토양오염인자인 건설기계 폐유, 지장물, 건설폐기물 등의 관련내용은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항목에 제시토록 할 것임	토양 (일반)
			·제방축제 및 교량 등 구조물 설치공사시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영향검토 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 필요	소음·진동 (중점)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환경인자에 대한 발생사항 없음	위생·공중 보건 (제외)
			·전파장해를 유발하는 시설공사 등의 발생 사항 없음	전파장해 (제외)
			·일조장해를 유발하는 시설공사 등의 발생 사항 없음	일조장해 (제외)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공사시 발생 오수 및 폐기물의 환경기초 시설과 연계처리 검토는 「수환경의 보전」,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항목에 제시토록 할 것임	제외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제방축제 및 시설물 개량, 보수 등에 따른 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수립 필요	친환경적 자원순환 (일반)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한 공간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파악 및 편입토지의 보상대책 수립	토지이용 (중점)
			·하천사업 특성 검토결과 위락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예상됨	위락 (제외)
			·대·중·소 규모의 인구유입을 발생하는 사업이 아님에 따라 평가항목 제외함	인구 및 주거 (제외)
·산업변화에 미치는 사업이 아님에 따라 평가항목 제외함			산업 (제외)	

2.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2.2.1 평가범위 설정

-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설정은 입지타당성 항목에 한하여 설정하였으며, 정량적인 거리제시가 가능한 대기질, 소음·진동 등에 대해서는 평가범위 거리를 제시하였고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으로 설정함
- 한편, 정량적인 범위 설정이 가능한 대기질 및 소음·진동 항목에 대해서는 계획하천(임야로 둘러싸인 산지형 하천)의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범위를 아래와 같이 설정함

〈 표 2 - 4 〉 평가범위 설정

구 분		평가 내용		평가범위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사업시행시 자연의 훼손 및 동·식물상 변화 여부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 서식지 변화여부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자연환경 자산	·계획하천별 계획수립구간 보호대상지역 분포여부 검토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계획하천의 지형, 지질의 특성파악 ·절·성토 발생에 따른 부축토, 사토 발생 ·제방공사시 정지·다짐 공사 등 지형변화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계획하천의 치수 목적을 위한 축제 및 보축 등 시설물 설치에 따른 경관변화 발생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수환경의 보전	수질	·절·성토지역의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근무인력의 오수발생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변화로 인한 오염부하량 변동 발생	계획하천 및 합류점 일원
수리·수문		·제방축조 및 시설물 설치 등의 적정성 확보 여부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표 계속)

구 분		평가 내용		평가범위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의 부합성	기상	.인근 기상대 최근 기상현황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대기질	.공사장비 투입 및 토사운반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계획하천별 반경 300m이내
		소음 .진동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계획하천별 반경 200m이내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업시행시 건설폐기물 및 폐유 등 발생 .작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뇨 발생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 이용	.합리적인 제방계획 수립을 통한 토지 이용 효율 성의 적정성 검토 필요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2.2.2 평가방법 설정

〈 표 2 - 5 〉 평가방법 및 예측분석 기법 설정

구 분	평가항목	평가방법 설정	예측·분석기법 설정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 상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동·식물상 분포현황 .사업계획에 따른 식생 및 동물상 변화	.현지조사 및 문헌자료 활용
		자연환 경자산	.하천별 계획수립구간 환경보전 용 도지역 저축 발생여부 검토	.현지조사 및 문헌자료 활용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 .지질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의 변화 정도 .토량의 공급 및 처리대책 .토사유출이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종·평면도 및 횡단면도 분석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자연경관심의대상 해당 여부 검토 .축제, 보축, 교량 등 설치에 따른 하천 경관변화 여부	.문헌자료 및 사진합성기법

(표 계속)

구 분	평가항목		평가방법 설정	예측·분석기법 설정
자연환경의 보전	수환경의 보전	수질	·강우시 토사유출 및 오수발생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하천유역 내 환경보전 목표설정을 위한 환경기준 제시 및 계획시행 전·후 오염부하량 비교	·우수유출량과 토사유출량 산정, 영향예측·분석
		수리·수문	·홍수량, 홍수위 검토를 통한 시설물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하천기본계획(변경) 보고서 활용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상	·최근 기상자료 분석·정리	·문헌자료(최근 10년간 기상자료)
		대기질	·공사장비 투입 및 토사 운반으로 인한 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영향예측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건설표준품셈, 건설연구사, 2016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00, 국립환경연구원
		소음·진동	·계획하천 주변 정온시설 분포 파악 및 건설장비 소음·진동 영향예측·저감대책 수립	·건설기계류 소음특성, 국립환경과학원, 200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 순환	·공사시 폐유량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생활폐기물, 분뇨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건설표준품셈, 건설연구사, 2016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 이용	·시설물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대책 강구	·하천기본계획(변경) 보고서 및 문헌자료 활용

2.3 대안의 설정

- 대안 설정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여야 함
-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아래 표의 범위 내에서 환경영향평가법 1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적정한 대안을 선정하여야 함. 또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대안을 선정할 때는 행정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포함하여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각 대안은 행정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해 실천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선정해야함
- 대안의 설정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6개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대안의 종류 : 별표 3[전략환경영향평서의 작성 방법(제23조 관련)]

〈 표 2 - 6 〉 대안의 종류 및 선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유무
계획비교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지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 본 계획에서의 대안선정은 행정계획의 수립, 시행에 따른 여러 비교·대안 중 3개 대안[계획비교], [수단·방법],[시기·순서]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여 비교·검토를 실시 후, 최적안을 선정하였으며, 대안의 종류 중 [수요·공급], [입지], [기타] 등은 본 과업의 특성상 계획에 따른 단순 비교 및 비교대안의 설정이 불가능하여 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자료에서 제외하였음

〈 표 2 - 7 〉 대안의 미선정(제외사유)

대안의 종류	미선정 사유	비 고
수요·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획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개수계획 및 수자원종합개발 지침으로 활용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고 하천의 홍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획에 따른 단순 [수요·공급] 예측은 불가능하여 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자료에서 제척하였음 ·추후 하천정비사업시 수요 대비 공급을 감안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규모의 사업이 되도록 할 계획임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획은 계획홍수위와 기존 제방고를 비교·검토하고 유수소통 및 구조물의 능력을 검토·진단하여 동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과 홍수시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본 계획은 하천기본계획 특성상 하천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계획으로 별도의 개발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이 아니므로 대안선정이 불가능하여 제척하였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획시행에 따른 [기타] 대안은 없으며, ·추후 하천정비사업시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안제시시 적극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음 	

2.4 대안의 비교

2.4.1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검토

- 본 계획은 평창강 하류권역 지방하천 4개소를 대상으로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사업추진 및 원활한 유지관리와 하천의 일관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수자원 및 하천환경보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이 되도록 시행하는 하천기본계획임
- 계획하천인 평창강 하류권역 지방하천에 대한 현상태 유지와 계획 수립을 비교하였음
 - 대안 1 : 하천기본계획 수립시(Action)
 - 대안 2 : 현상태 유지(No Action)

〈 표 2 - 8 〉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검토

평가영역	대안1 :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Action)	대안2 : 현상태 유지(No Action)
토지이용 측면	·계획적인 토지이용으로 토지이용상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무분별한 토지이용으로 이용 효율성저하(토지이용계획상의 변화 없음)
수자원 이용측면	·수자원이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성 증대	·계획되지 않는 하천계획으로 비효율적인 수자원이용
각종 보호지에 미치는 영향	·본 계획하천이 주요 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아 본 계획 수립으로 인한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생태계훼손 가능성	·공사에 따라 일부 생태계훼손의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됨	·생태계변화 없음 ·홍수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생태계파괴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계획시행에 따라 일부 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나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지형의 변화가 없으므로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	·계획의 시행에 따라 하천 및 인근지역을 정비하는 효과에 따라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효과가 예상됨	·자연재해(집중호우 등)시 인근지역의 침수 등이 예상됨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미치는 영향	·하천정비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 종전보다 일반지역환경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	·일반지역환경의 변화가 없음 (현상태가 유지되나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지역환경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됨)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친환경 호안식생계획 수립으로 하천경관의 긍정적인 개선효과 기대됨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없음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공사시 일시적으로 부유토사의 발생으로 수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하천수질의 변화는 없음
계획수립부서	◎	
선정사유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일시적인 생태, 환경적 영향이 소규모 예상되나,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개수계획을 통한 효율적인 하천이용 및 수자원종합개발, 홍수피해 방지, 하천의 체계적인 개발지침으로의 활용, 능동적인 하천수질관리 측면 등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바, 하천정비를 시행(Action)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4.2 수단·방법

- 수단·방법은 금회 하천기본계획의 홍수량 계획하폭, 호안공법에 따른 대안을 선정하였음

(1) 계획홍수량 산정

〈 표 2 - 9 〉 홍수량 산정방법 비교

구 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산정공식	Clark 유역추적법	SCS 무차원 단위도법	Snyder 합성단위도법
내 용	·유역의 도달시간 및 누가 면적을 통해 순간단위유량 도를 유도하여 유출량을 산정	·단위도의 침투유량과 침투 유량 발생시간을 결정한 후 무차원단위도를 사용하여 합성단위도를 산정	·유역의 특성에 따른 상수와 조정된 지체시간을 입력인자로 하는 2 매개변수 합성단위도 방법
장 점	·유수의 전이효과뿐만 아니라 유역의 저류효과도 고려할 수 있음	·지체시간만을 매개변수로 하므로 적용이 단순함	·합성단위도법으로 산정방법이 다른 단위도방법과 비교치로 사용
단 점	·일정규모 이하의 유역에 적용할 경우 저류효과를 산정하는 소유역의 크기가 극소하게되어 이를 기준하여 적정홍수량을 산정함이 곤란함	·경사가 매우 완만한 유역에는 적용성이 떨어짐	·Snyder방법에 의한 홍수량은 다른 단위도 방법에 의한 결과와 많은 차이를 나타내어 현실적인 적용성이 매우 낮음
선정안	◎		
선정사유	·홍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단위도의 특성에 대한 제어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장 널리 추천되는 방법인 Clark 유역추적법으로 금회 홍수량을 산정하였음		

- 유역의 특성, 일반적인 국내의 관례, 하천시설기준상의 빈도 및 상위 하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하천규모에 따른 설계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회 대상하천 구간에 대해 80~100년 빈도를 채택하였음

〈 표 2 - 10 〉 계획홍수량 설계빈도 결정

하천중요도	계획규모(재현기간)	적용하천 범위	선 정
A급	200년 이상	국가하천의 주요구간	80~100년 빈도
B급	100 ~ 200년	국가하천	
C급	50~200년	지방하천	

(2) 계획하폭





〈 표 2 - 11 〉 계획하폭 산정

구 분~80년	대안 1	대안 2														
산정공식	홍수량 기준	중소하천 하폭공식														
내 용	·하천설계기준에 의거한 홍수량 대비 적정하폭 기준 적용	·중부지방 : 경기, 강원, 충남 북 $B = 1.303 \frac{A^{0.318}}{\sqrt{I}}$ ·한강유역 중소하천 $B = 0.619 \left(\frac{Q}{\sqrt{I}} \right)^{0.528} + 3.14$														
	<table border="1"> <thead> <tr> <th>계획홍수량 (m³/s)</th> <th>계획하폭 (m)</th> </tr> </thead> <tbody> <tr> <td>300</td> <td>40 ~ 60</td> </tr> <tr> <td>500</td> <td>60 ~ 80</td> </tr> <tr> <td>800</td> <td>80 ~ 110</td> </tr> <tr> <td>1,000</td> <td>90 ~ 120</td> </tr> <tr> <td>2,000</td> <td>160 ~ 220</td> </tr> <tr> <td>5,000</td> <td>350 ~ 450</td> </tr> <tr> <td>5,000이상</td> <td>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하고 안정하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결정하되 기존에 발표된 경험공식을 참고한다.</td> </tr> </tbody> </table>		계획홍수량 (m ³ /s)	계획하폭 (m)	300	40 ~ 60	500	60 ~ 80	800	80 ~ 110	1,000	90 ~ 120	2,000	160 ~ 220	5,000	350 ~ 450
계획홍수량 (m ³ /s)	계획하폭 (m)															
300	40 ~ 60															
500	60 ~ 80															
800	80 ~ 110															
1,000	90 ~ 120															
2,000	160 ~ 220															
5,000	350 ~ 450															
5,000이상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하고 안정하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결정하되 기존에 발표된 경험공식을 참고한다.															
적 용	·현 상하류의 지형특성, 기개수 제방구간의 현하폭 및 법선하천구조물 유지관리, 축제 공사비, 유속, 소류력의 수리특성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계획홍수량 기준 및 중소하천 하폭공식을 비교·검토하여 적정한 하폭을 산정															

(3) 호안공법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적용가능한 호안공법의 분류는 다음과 같으며, 금회 하천기본계획에서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자연형 외관으로 경관이 우수한 친환경적인 식생매트, 계비온매트리스 및 자연석쌓기 공법을 채택하였음
- 호안공법은 목적인 기능에 대한 적합성과 아울러 경제성, 당해지역의 특성, 시공성, 재료구득 등의 용이성 및 기존 호안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나, 근래에는 환경 및 수변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다소 불리하더라도 자연형 호안을 설치하는 추세에 있음. 따라서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시 해당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되, 하천환경과 유수의 소류력과 같은 수리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공법을 결정함

〈 표 2 - 12 〉 축제 및 보축구간 호안공법 대안 검토

구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4
	식 생 매트	게비온 매트리스	자연석쌓기	파라펫
시공 전경				
공법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후 및 내구성을 가진 나일론 매트에 식생에 필요한 펄프와 씨앗을 살포하여 일체로 만든 식생시스템으로 각종 비탈면에 설치하여 비탈면의 침식을 방지하고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을 채울 수 있도록 그물 모양으로 짠 철망으로써 몸통망, 뚜껑, 사각링, 직봉으로 구성되어 있는 철망태 속에 돌을 채워 설치 ·망눈의 최소치수보다 크고 망태최소직경(높이)의 2/3 보다 작은 것. D=10~20cm (15cm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지반을 견실하게 정지하여 침하되지 않도록 함. ·크기가 0.5m' 내외인 돌을 이용 자연미와 조경미를 고려하여 상하 좌우의 돌이 안정되게 맞물려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지역에 홍수배수와 상시배수가 가능하도록 저수로의 선형을 직강화하고 수제부는 콘크리트로 처리함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탈면과 부착성 우수 ·균일한 품질 식생활착 ·기초공 불필요 ·자연생태적 친환경 공법 ·운반, 설치 시공이 간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굴요성이 좋음. ·돌망태간 결속으로 일체형 거동 ·합금 철선을 사용하여 철선부식이 적음 ·정량시공이 가능하며 속채움돌 선택의 폭이 넓음 ·전면이 고르며 외관이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구성이 뛰어나 반영구적 ·자연형으로 경관이 좋음 ·자연석에 의한 하안부 및 하상부 보호기능 ·자연석을 메쌓기 하여 틈이 많아 어류나 수생 곤충의 흡족한 생식장 및 피난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구성이 뛰어나 반영구적 ·전면이 고르며 외관이 양호 ·비탈면과 부착성 우수 ·균일한 품질 ·운반, 설치 시공 용이 ·타 공법에 비해 안정성 우수 ·급구배 사면의 시공 가능 ·하천 호안의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어 가장 경제적인 방법임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화가 완료되기까지 우수 등에 의해 법면 유실과 발아율이 저하 ·블럭, 돌망태와 같은 타공법에 비해 안정성 부족 ·급구배 사면의 시공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곡선부 시공시 틈새가 발생하여 틈새부분에 대한 별도의 대책 필요 ·부분 파손으로 연쇄적 파손피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쌓기에 있어 숙련공이 필요 ·공사비 고가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 ·재료의 수급이 용이하지 못함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에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화 및 식생이 어려움 ·하천 자연경관 창출이 어려움
선정	◎	◎	◎	

2.4.3 시기.순서

- 사업특성상 공사시 하천생태계 교란최소화 및 생태계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기 및 산란시 공사를 지양하는 안으로 선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표 2 - 13 〉 시기.순서에 따른 대안검토

	대안 1(우기 및 산란시 공사지양)	대안 2(연중 공사)
장 점	·갈수기시 공사로 하천의 오탁발생 최소화 가능 ·수생태계 교란 최소화 및 하천의 생태계 연속성 확보 가능	·공사기간 제약 완화로 공기 단축 가능 ·공기 단축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
단 점	·공사기간이 연중공사에 비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의 탄력적 조절이 필요	·연중 지속적인 공사 시행으로 인한 하천 생태계 서식지 교란 예상 ·오탁발생에 따른 수질 악화 가중, 홍수시 공사 안전사고 및 주변 지역 재해 발생 우려
선정(안)	◎	
선정사유	·하천생태계 교란최소화 및 생태계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기 및 산란시 공사를 지양하는 안으로 선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5.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주관부서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심의기간 : 2020년 7월 17일 ~ 7월 30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평창강 하류권역(지류 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 심위위원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위원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이강녕	수립기관
위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윤경목	
"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	김기용	협의기관
"	강원대학교(삼척) 교수	허우명	전문가 (협의기관 추천)
"	단양군청 환경과장	손문영	사업지역 관계기관 (평창강 하류(본류 구간))
"	영월군청 환경위생과장	이재도	
"	(주)참생태연구소	백현민	전문가 (수립기관 추천)
"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이용호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
"	단양군 주민대표 (어상천면 주민자치위원)	조광희	주민대표 (지자체 추천)
	영월군 주민대표 (동강보존본부)	엄삼용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및 협의회 개최 알림(평창강 하류권역(지류))

1. 하천계획과-2078(2019.07.11.)의 관련입니다.
2.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 '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용역'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평창강(지류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평가준비서에 대하여 검토 후 심의결과 통보서(붙임양식)를 2020. 7. 3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운영 개요 】

- 가. 건 명 : 평창강 하류권역(지류구간)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 나. 인원 : 위원장 등 10인
- 다. 일 정 : 2020. 07. 17. ~ 2020. 07. 30.
- 라.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 평가준비서 배포 및 사전설명은 해당 용역을 수행중인 용역사에서 방문 설명
- 마. 심의안건 : 평창강 하류권역(지류구간)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
- 바. 제출방법 : 문서 회신 또는 이메일 제출(koycgood@korea.kr)
- 사. 기타사항 : 평창강 본류구간 협의회 기 운영 완료(2019. 7. 12. ~7. 26.)

- 붙임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계획 1부.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위원(변경) 1부.
3. 심의결과 통보서 1부.
4.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준비서 1부(별첨) 1부. 끝.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수신자 원주지방환경청장(환경평가과), 단양군수(환경과장), 영월군수(환경위생과장), 강원대학교 허우명 위원, (주) 참생태연구소 백현민 위원,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이용호 위원, 이상천면 주민자치위원장 조광희 위원, 동강 보존본부 임상용 위원

주무관	고유철	사무관대우	김태웅	하천계획과장	윤경복	하천국장	전결 2020.7.15. 이근성
협조자							
시행	하천계획과-2265			접수			
우	2646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반곡동)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http://www.molit.go.kr/wrocm
전화번호	033-769-5683	팩스번호	033-742-0772		/ koycgood@molit.go.kr		/ 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2.5.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결과

<div style="text-align: center;">  <p>원주지방환경청</p> <p>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장)</p> <p>주관: 원주시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장)</p> <p>주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일일(평창강 하류권역(지류 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p> <p>1. 원주시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2265(2020.7.15.) 호와 관련입니다.</p> <p>2. 귀 기관에서 요청한 '평창강 하류권역(지류 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붙임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1부. 끝.</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원주지방환경청장</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주무관 김소연</td> <td style="width: 25%;">주무관 이은서</td> <td style="width: 25%;">과장 김기홍</td> <td style="width: 25%;">인근 500.7.30</td> </tr> <tr> <td colspan="4">합동서</td> </tr> <tr> <td colspan="2">시영 환경평가과-4769</td> <td colspan="2">접수 하천계획과-2445 (2020. 8. 2.)</td> </tr> <tr> <td colspan="4">우 26461 강원도 원주시 인촌로 65 (반곡동) 원주지방환경청 / http://www.me.go.kr</td> </tr> <tr> <td colspan="4">전화번호 033-760-6404 팩스번호 033-765-0003 / syk0614@me.go.kr / 비공개(5)</td> </tr> </table> </div>	주무관 김소연	주무관 이은서	과장 김기홍	인근 500.7.30	합동서				시영 환경평가과-4769		접수 하천계획과-2445 (2020. 8. 2.)		우 26461 강원도 원주시 인촌로 65 (반곡동) 원주지방환경청 / http://www.me.go.kr				전화번호 033-760-6404 팩스번호 033-765-0003 / syk0614@me.go.kr / 비공개(5)				<div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 평창강 하류권역(지류 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p> <p>【 평창강 하류권역(지류 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 】</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사업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및 규모: 평창강 하류권역(지류 구간) 총 37.57km(42개 하천) ○ 계획수립자(승인기관): 원주시방국토관리청(원주시방국토관리청) ○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 </div> <p>1 총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이·치수 목적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환경·생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나친 인공화는 지양하고 본래의 자연 생태계를 보전·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아래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수립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 및 이에 따른 대안 설정·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함. <p>2 세부 심의의견</p> <p>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 설정은 계획이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고, 그 범위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류 합류점, 지류 소하천과의 연계성(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사범위 설정 - 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계획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개발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을 경우 이를 대상지역에 포함 - 지형·지질,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진동, 수질, 수리·수문 등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최대한 확대·설정 <p style="text-align: center;">- 1 -</p>
주무관 김소연	주무관 이은서	과장 김기홍	인근 500.7.30																		
합동서																					
시영 환경평가과-4769		접수 하천계획과-2445 (2020. 8. 2.)																			
우 26461 강원도 원주시 인촌로 65 (반곡동) 원주지방환경청 / http://www.me.go.kr																					
전화번호 033-760-6404 팩스번호 033-765-0003 / syk0614@me.go.kr / 비공개(5)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평창강 하류권역(지류 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p> <p>○ 대상지역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도면에 표기하여야 함.</p> <p>나. 토지이용구상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하천의 이·치수적 측면과 자연·생태환경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경관이 우수한 지역 통과·인접구간 내 시설물 설치물 지양하고,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등 인위적 구간은 자연성을 복원하는 방안 강구 - 하천 본래의 유로, 하폭 및 하상을 최대한 보전하고, 수리·수문 분석 및 제내지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정비계획 수립 - 홍수 및 수해피해 등을 고려한 수중부 구간 중심의 하천공사 시행 - 야생동물의 회피·중적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검토 (호안 환경사 조성 및 친환경적 공법 적용, 제방 투수성 포장, 생태도 설치 등) -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하천변 식생대 조성, 하천정화활동 등) 강구 ○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안 조성 시 사후 식생 도입이 가능한 공법을 적용하고, 별면경사는 최대한 환경사로 조성 - 기존 콘크리트 옹벽 등 인위적인 정비 구간에 대한 자연성 복원 방안 - 인위적 구조물로 인한 하천의 연속성과 생물의 분산능력 저해 요인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 등 기존 시설물의 기능 재검토를 통하여 기능 저하 또는 상실된 구조물 철거 등 <p>다.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기본계획의 목적, 기대효과, 하천변 유역현황, 토지이용현황, 홍수 등 재해현황,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계획·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 및 선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 2 -</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평창강 하류권역(지류 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설계빈도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비교·검토 - 하천 내 생태·경관 현황, 하천변 시설물 설치 및 주민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공간관리를 위한 지구지정의 대안 설정·제시 - 하천공간관리와 관련하여 기 수립 하천기본계획과 급회 수립하는 계획을 비교·제시하고, 전수구역의 경우 지정사유 및 근거자료 제시 ○ 각 대안은 비교·검토가 가능한 통합자료(대안별 도면 및 사업내역 비교표 등)와 대안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별자료(사업내용 및 주요 대안별 환경적 특징 등)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p>라.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예방 및 환경 개선과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 하천정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직전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급회 수립 내용을 비교 검토·제시하여야 함. - 기 수립된 각종 계획과 급회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을 비교·검토 가능하도록 현황 및 변경사항(하천 유로 및 폭, 시설물 설치내용 등)을 도표로 제시 - 수리·수문 항목 검토 시 기존 시설물의 계획제방고 만족여부를 제시하고, 만족구간의 시설물 설치계획에 대한 타당성 근거자료 구체적으로 제시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토지이용, 지형·지질),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수질, 수리·수문)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여야 함. - 하천 유로의 인위적 변경, 축제·보축·하상 준설 등으로 인한 수생태계 훼손 및 수질 악화, 경관 저해 등 악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 생태·자연도, 야생생물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 관련 지역·지구·구역 현황, 해당 지역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각종 문헌 등 검토 <p style="text-align: center;">- 3 -</p>																				

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u>평창강 하류권역(지류 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수지구 지정 및 배전부지 활용, 제방 등나무 조성·확장 등 하천 주변의 오염부하량 증가 등에 따른 수질보전 대책 - 해당 하천의 유역 특성, 강우·기상 등 자연조건, 수해 및 가뭄피해 현황 등을 고려한 수리·수문 분석 - 기존 자료 및 문헌 조사의 경우 대상 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5년 이내의 자료를 활용하되, 출처를 명확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지역에 5년 이내의 최신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확대 - 현지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시기에 실시(갈수가·평수기, 생육이 왕성한 시기, 육수생물 산란기 등 고려하여 조사시기 선정) <p>마. 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서에 제시하는 각종 도면 등의 자료는 육안 판독이 가능하고 계획 수립 내용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 평가서 작성 등의 참여 기술인력 현황(하도급 포함)은 실제 참여하는 기술인력과 평가항목별 및 권역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제시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right;">2020. 7. 31.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 김 기 용</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평창강 하천기본계획(지류) 수립 용역)</p> <p><input type="checkbox"/>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및 일본에 내린 집중강우로 이들 지역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강우강도, 집중강우 등)을 고려하여 호안공법(축제, 보축, 횡단시설물 등)을 적용하되, 가능한 인위적인 시설물을 배제하고 자연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공법 적용 요망. <p><input type="checkbox"/> 심의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 1 - 적정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수동물 조사 시 부착조류, 저서생물 및 어류 포함, 또한 이들의 서식환경이 되는 하상기질(자갈, 호박돌 등) 조사도 병행되어야 함. 4.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조) <p style="text-align: right;">2020. 07. .</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허 우 명 </p> </div>						
<p style="text-align: center;">공과 책임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font-size: 24px; font-weight: bold;">단 양 군</p> <p style="font-size: 12px;">단양군청</p> </div> </div> <p>수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경유)</p> <p>제목 평창강 하류권역(지류)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 통보서 알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계획과-2265(2020.7.15.)호의 '평창강 하류권역 기본계획 수립(변경) 용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결과통보서를 불합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우리군 2020.7.9.일자 정기인사에 따른 심의위원 변동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input type="checkbox"/> 변동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3%;">당초</th> <th style="width: 33%;">변경</th> <th style="width: 33%;">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직위: 과장 / 성명: 김영동</td> <td>직위: 과장 / 성명: 손문영</td> <td></td> </tr> </tbody> </table> <p>불합 심의결과통보서 1부, 끝.</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단 양 군 </p> <hr style="border: 1px solid gray;"/> <p style="font-size: 10px;">주무관 조삼현 환경지도팀장 손행성 환경과장 손문영 전달 2020. 7. 29.</p> <p>합조자</p> <p>시행 환경과-26556 (2020. 7. 29.) 접수 하천계획과-2421 (2020. 7. 29.)</p> <p>우 27010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 https://www.danyang.go.kr</p> <p>전화번호 043-420-2662 팩스번호 043-420-2659 / over100@korea.kr / 비공개(5,6)</p> <p style="font-size: 8px; text-align: center;">내 개인정보는 철저히 지키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존중해 줘!G01</p>	당초	변경	비고	직위: 과장 / 성명: 김영동	직위: 과장 / 성명: 손문영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평창강 하천기본계획(지류) 수립 용역)</p> <p><input type="checkbox"/>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및 인근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계획 수립과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p><input type="checkbox"/> 심의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시행 시 사업지역의 지형 및 수생태계 등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 시 삼화천 및 주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하천의 자연성을 살리고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함. ○ 삼화천의 자연스러운 굴곡과 유묘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물길에 갖는 자연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4.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p style="text-align: right;">2020. 7. 29.</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손 문 영 </p> </div>
당초	변경	비고					
직위: 과장 / 성명: 김영동	직위: 과장 / 성명: 손문영						

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들의 결정내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p>변화하 도약 살기 좋은 영월</p> <h3 style="margin: 0;">영 월 군</h3> </div> <p>수신 원주시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의견 (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회신</p> <p>1. 환경보전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p> <p>2. 하천계획과-2265(2020.07.15.)호와 관련하여 "평창강 하류권역(지류)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p> <p>붙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의견(평창강 하류권역).</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p>영 월 군</p> </div> <hr/> <table style="width: 100%; font-size: small;"> <tr> <td>주무관</td> <td>김도연</td> <td>환경위생과 유역관리팀장 신계철</td> <td>환경위생과장 이계도</td> <td>전화 230.7.30.</td> </tr> <tr> <td>합조사</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시행</td> <td>환경위생과-27219</td> <td>(2020. 7. 30.)</td> <td>접수 하천계획과-2427</td> <td>(2020. 7. 30.)</td> </tr> <tr> <td>우</td> <td>26235</td> <td>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td> <td></td> <td>/ https://yw.go.kr</td> </tr> <tr> <td>전화번호</td> <td>033-370-2689</td> <td>팩스번호 033-370-2228</td> <td>/ longtoe@korea.kr</td> <td>/ 비공개</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영월군 고객상담 콜센터 1577-0545</td> </tr> </table>	주무관	김도연	환경위생과 유역관리팀장 신계철	환경위생과장 이계도	전화 230.7.30.	합조사					시행	환경위생과-27219	(2020. 7. 30.)	접수 하천계획과-2427	(2020. 7. 30.)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https://yw.go.kr	전화번호	033-370-2689	팩스번호 033-370-2228	/ longtoe@korea.kr	/ 비공개					영월군 고객상담 콜센터 1577-0545	<div style="text-align: center;"> <h4 style="margin: 0;">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h4> <p style="font-size: x-small;">(평창강 하류권역(지류 구간) 하천기본계획)</p> </div> <p>□ 총괄 의견</p> <p>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물환경관리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환경목표 달성여부를 검토하고 군 환경계획과 시책을 연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함.</p>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정비 계획에 따른 공사구역 인근 정온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소음 등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 2.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하천들은 전형적인 농촌지역 하천으로 기존에는 이수과 치수기능을 중심으로 하천 정비가 이루어 졌으나 생태하천 복원 등 하천의 환경적인 기능을 적극 고려한 계획 수립이 필요 3.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안계획은 환경친화적인 호안공법 등을 비교·검토하여 선정 필요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의 상류, 하류지역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문헌자료 등을 참고하여 하천의 수질 개선방안과 관리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야 함. 특히 하천정비 공사 예정구역의 경우 인접한 마을주민의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right;">2020. 07. .</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이 계 도</p>
주무관	김도연	환경위생과 유역관리팀장 신계철	환경위생과장 이계도	전화 230.7.30.																											
합조사																															
시행	환경위생과-27219	(2020. 7. 30.)	접수 하천계획과-2427	(2020. 7. 30.)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https://yw.go.kr																											
전화번호	033-370-2689	팩스번호 033-370-2228	/ longtoe@korea.kr	/ 비공개																											
				영월군 고객상담 콜센터 1577-0545																											
<p>【붙임 3】</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h4 style="margin: 0;">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h4> <p style="font-size: x-small;">(평창강 하천기본계획(지류) 수립 용역)</p> </div>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홍안 설계 시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이 발생되므로, 반영한 강우폭 강우빈도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발 하천에는 경유하기 어려운 시성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미 대한 부분은 반영이 심 의 의 건 검토 되어야함 <p>□ 심 의 의 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방향에서 하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및 수질 등에 대한 ○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작성한 분은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됨 ○ 하천의 조식생태를 해당 지역의 동진유 이차역 구상도 포함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됨. (여건상 어려운 경우 유선으로 대체하여 분석) 4.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p style="text-align: right;">2020. 7. 30.</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이 계 도 (인)</p>	<div style="text-align: center;"> <h4 style="margin: 0;">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h4> <p style="font-size: x-small;">(평창강 하류권역(지류 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p> </div> <p>□ 총괄 의견</p> <p>○ 본 사업구간은 제해예방, 치수방제 등을 고려하되 현재의 자연하천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구간의 수질 및 생태적 특성과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해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흐름을 저해하는 구조물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하며 기존 자연재료의 최대한 보전해야 하고, 계획 수립 시 친환경적인 공법을 채택 해야 함. 3.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안공법 적용시 인공적인 공법을 제외하고 친환경적 식생매트, 자연석 쌓기 등을 선정할 대안이 적절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호중, 천연기념물 등 동·식물상 현황을 파악하여 특성에 맞는 보전 대책을 수립해야 함. ○ 설정한 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구간 주민들에게 본 사업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해당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보고서에 반영해야 함. 6. 기타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의견 없음. <p style="text-align: right;">2020. 7. .</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이 용 호 (인)</p>																														

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p>【붙임 3】</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평창강 하천기본계획(지류) 수립 용역)</p> <p><input type="checkbox"/>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의견 없음. <input type="radio"/> <p><input type="checkbox"/> 심의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이과 의견 없음. <input type="radio"/>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2020. 7. .</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조광희(인)</p> </div>	<p><별지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통보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p> <p><input type="checkbox"/>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계획구간은 감입곡류의 원형을 잘 간직한 하천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공사시 하천하상에 퇴적한 모래와 자갈등 자연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input type="radio"/> 하천내부에 혼하게 관측되는 천연기념물과 환경부 보호종이 관측되는 지점으로 공사로 인해 하천수랑의 단절 및 장기간의 오락수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p><input type="checkbox"/> 심의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구간을 전체의 구간으로 획일적인 공사보다는 하천 수통의 범목지점이나 잦은 홍수범람 농경지의 침수지역을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의 특성상 공격사면과 퇴적사면에 공통적으로 자연친화적 요인 불력 공법을 적용해서는 야생동물의 이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야생동물의 이동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 하천내부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과 보호종에 대한 생태조사와 더불어 각별한 보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 계획 구간내에 용도를 하지 못하는 인공구조물에 하도(수중보)은 철거를 공사계획에 반영하여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이 필요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구간내의 주요한 어류 분포조사를 문헌과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로 인한 피해 저감이 될수 있는 공사계획 수립이 필요함. ○ 공사시 발생하는 환경적인 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단절이 되지 않도록 공사기간 동안의 수·생태 환경조사가 수행되어야 함. ○ 획일적인 돌망태 및 호안 블록등의 설계가 아닌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하천내 외부를 이동하며 생존하는 동물들의 이동 통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의견이 반영 될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수반되어야 함.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2020.07.30</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염삼용 (인)</p> </div>
--	---